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  
PROSECUTION SERVICE

##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형사 1부장 김은경

**보도자료**  
2024. 1. 3.(수)

전화번호 : 061-280-4329

Fax : 061-280-7841

### 제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

- 오늘(1. 3.)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(지청장 최혁)은 '24. 4. 10.(수)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「유관기관 대책회의」를 개최하여 협력체제 구축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.
- 검찰, 선거관리위원회, 경찰은 긴밀하게 협력하여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 ▲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, ▲선거 관련 금품수수, ▲공무원·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포함한 선거범죄에 신속·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.
-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단계별 특별근무에 돌입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 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공명·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#### 1 회의 개요

- 일시·장소
  - 2024. 1. 3.(수) 14:00, 광주지검 목포지청 5층 중회의실
- 참석자(총 15명)
  - 검찰(3명) : 형사2부장, 공공수사 전담검사(2명)
  - 선관위(6명) : 전남·목포·영암·무안·함평·신안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
  - 경찰(6명) : 전남·목포·영암·무안·함평·신안 경찰서 담당자

## 2

## 주요 회의 내용

### ● 선거사범 유형 분석 및 수사정보 공유

- 검찰, 경찰,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검·경이 소통·협력한 금권선거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례 등 최근 선거사건 관련 수사착안점, 노하우, 유의사항, 과학수사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선거사범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하였습니다.

### 조합장 선거 과학수사 사례

- 甲 농협 조합장 낙선자 A와 甲 농협 영농회장 B가 공모하여 조합원에게 현금 2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송치된 사안에서, A와 B 사이 통화내역 분석하여 A와 B 사이 공모 정황이 없음을 확인하고, 압수된 현금을 대검 DNA 분석 의뢰하여, 현금에서 B의 DNA 확보하는 등 과학수사를 통해 A는 불기소, B는 불구속 기소

### ●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대응

- 검·경은 최근 선거범죄 발생 추이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3대 중점 단속대상을 선정하고,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·엄정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

###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

- (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) ▲ SNS상 가짜뉴스, 흑색선전 등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▲ 허위사실공포 ▲ 후보자 비방 ▲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등
- (선거 관련 금품수수) ▲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▲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▲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제공·요구 등
- (공무원·단체 등의 선거개입) ▲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▲ 공무원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 ▲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등

● **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**

- 선거구별 지정된 전담 검사가 선관위, 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 협조체제 구축하고,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소통과 사전협의를 통해 정보 공유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.
- 적기의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영장 신청 및 청구 관련하여 검찰은 선거 사건 영장 전담 검사제도를 운영하고, 경찰은 영장 신청시 상시 소통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
- 특히 검·경은 개정 수사준칙 제7조 제1항, 제2항에 따라 선거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필수적으로 의견 제시·교환하고,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의견을 제시·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.

「**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**」

- 제7조 제1항에 따라, 선거사건 등 중요사건의 경우,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, 증거수집의 대상, 법령의 적용,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 제시·교환 요청이 가능하고, 상대방은 요청에 응하여야 함
- 제7조 제2항에 따라,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호 의견을 제시·교환해야 하고, 공소시효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호 의견을 제시·교환해야 함

● **적법절차 준수 및 정치적 중립 유지**

- 수사과정 전반에서 인권침해 및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항상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,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.
- 특히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고,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### 3

## 향후 계획

-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,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였으며, 공소 시효 완성일(2024. 10. 10.)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.
- 3개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선거범죄 적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'법과 원칙'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여,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### 선거사범 신고센터

▶ 검찰

국번 없이 1301, 야간 (062) 280-4290

▶ 선거관리위원회

국번 없이 1390, 인터넷신고 <http://www.nec.go.kr>

▶ 경찰

국번 없이 112, 인터넷신고 <http://police.go.kr>